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2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년 8월 31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8년 9월 7일

라. 상정일자: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8. 9. 1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담당관 김연주)

가. 제안이유

- 영등포 스마트메디컬(Smart-Medical)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특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의료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9조)
-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제15조)
- 예산 지원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광목)

-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과 의료관광 협의회 설치근거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와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의료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이나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관광정보를 국내외 홍보마케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 안 제17조에서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와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사무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음식·숙박업, 관광·레저산업, 문화사업 등 여러 산업분야에 연관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결합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관심분야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개발과 분야별 균형 있는 육성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 호
----------	-------

제출연월일 : 2018.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영등포 스마트메디컬(Smart-Medical)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특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의료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9조)
- 다.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제15조)
- 라. 예산 지원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 라. 입법예고(2018. 7. 19. ~ 8. 8. / 20일간)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와 동반자에게 안내 우수 의료기술 및 의료진을 안내하고 원무·의료상담·진료를 지원하며,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협력기관”이란 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영등포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의료관광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 지정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영등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의 의료기관, 언론인,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④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및 홍보
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역·번역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업무

제11조(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홍보·마케팅)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는 등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의 의료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2. 관광·쇼핑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
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4.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추진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협력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내센터의 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